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칠승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성기업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하도록 하는 등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1.4.20 공포, '21.10.21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작성·관리(안 제6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1.6.17. ~ '21.8.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)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금, 인력 및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
2.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
3.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통계를 작성·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)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자금, 인력 및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.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.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 통계를 작성·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	
연 락 처	042-481-4363